

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(공고)

주주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3 조에 의거하여 제 23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~~~ 아 래 ~~~

**1. 일시:** 2026 년 03 월 23 일 오전 10 시

**2. 장소:**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, 4 층 대회의실  
(인덕원동, 대륭테크노타운 15 차)

### 3. 회의목적사항

1) 보고사항

가. 감사보고

나. 영업보고

다.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

2) 부의안건

제 1 호 의안: 제 23 기(2025.1.1~2025.12.31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 2 호 의안: 정관 일부 개정의 건

제 3 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

제 3-1 호 의안: 사내이사 김영달

제 3-2 호 의안: 사내이사 김기수

제 3-3 호 의안: 기타비상무이사 조신용(비상근)

제 3-4 호 의안: 사외이사 김화수(비상근)

제 4 호 의안: 감사 선임의 건: 임홍재(비상근)

제 5 호 의안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 6 호 의안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### 4.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

상법시행령 제 31 조(주주총회의소집공고)4 항 4 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개최 1 주전까지 회사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

- 제출(예정)일: 2026.03.13

- 홈페이지주소: [www.linkgenesis.co.kr](http://www.linkgenesis.co.kr)

### 5. 경영참고사항 비치 (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비치)



상법 제 542 조의 4 의 3 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명의개서대행사 (한국예탁결제원)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6.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

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종전처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## 7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제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: 「<https://vote.samsungpop.com>」

나. 전자투표 행사기간: 2026 년 03 월 13 일 09 시~2022 년 03 월 22 일 17 시

- 기간 중 24 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(단, 시작일은 9 시부터, 마감일은 17 시까지)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즈우건용/법용 공동인증서 인증, 카카오 인증, PASS 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

## 8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등

- 본 인: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)

- 대리인: 위임장,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\* 위임장 기재 사항

위임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

대리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

위임인의 인감 날인

-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-03-06

주식회사 링크제네시스

대표이사 정성우(직인생략)

**[별첨1] 정관 신규조문대조표**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b>제15조 【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】</b>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.</p> <p>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| <p><b>제15조 【기준일】</b>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삭제)</p> | <p>[본문개정]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」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 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을 반영하여 개정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16조2 【주주명부】</b>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<b>제16조2 【주주명부의 작성·비치】</b>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[본문개정] 「전자증권법」 제 37 조 제 6 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.</p> <p>- 「전자증권법 시행령」 제 31 조 제 4 항 제 3 호 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</p> <p>- 기존 제 16 조의 2 의 내용을 이관함.</p> |
| <p><b>제24조 【소집지】</b>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<b>제24조 【소집지】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[본문신설] 「상법」 제 542 조의 14, 제 542 조의 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지 않음을 명시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31조 【의결권의 대리행사】</b>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<b>제31조 【의결권의 대리행사】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[본문개정]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「상법」 제 368 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를 제출하여야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3조 【이사의 수】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3조 【이사의 수】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,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,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본문개정]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「상법」 개정 내용을 반영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8조 【이사의 의무】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br><br>② ~ ④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8조 【이사의 의무】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br><br>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<br><br>③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본문개정]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「상법」 제 382 조의 3 개정내용을 반영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9조의2 【이사의 책임경감】 「상법」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「상법」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제39조의2 【이사의 책임경감】 「상법」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독립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「상법」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[본문개정]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「상법」 개정내용을 반영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6조 【이익배당】 ① ~ ② (생략)<br><br>③ 제 1 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br><br>④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6조 【이익배당】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br><br>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,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br><br>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본문개정]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7조 【분기배당】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, 6월 및 9월의 말일(이하 “분기배당 기준일”이라 한다)의 주주에게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<br><br>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7조 【분기배당】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,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<br><br>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로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본문개정] 매분기말 배당기준일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「자본시장법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<br><br>- 분기배당 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함 |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사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③ ~ ⑤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br><br>③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부칙<br>제 61 조 【시행일】<br>① ~ ⑦ (생략)<br><신설> | 부칙<br>제 61 조 【시행일】<br>① ~ ⑦ (현행과 같음)<br>⑧ 본 개정된 정관은 2026년 3월 23일 이후 법원 등기된 일부로 시행한다.<br>1. (소집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대한 적용례) 제24조,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br>2. (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, 제39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| [부칙신설] |

## [별첨2] 등기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등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성명<br>(생년월)   | 주요약력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천인 | 임기 | 회사와의<br>거래내역 | 최대주주<br>와의관계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기간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내<br>이사            | 김영달<br>196807 | 2023~현재   | (주)링크제니시스 사내이사              | 이사회 | 3년 | -            | 최대주주<br>의<br>대표이사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21~현재   | 아이디스파워텔(주) 대표이사 회장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11~현재   | (주)아이디스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12~현재   | (주)코텍 대표이사 회장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997~현재   | (주)아이디스 대표이사 회장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993~1998 | KAIST 전산학과 박사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내<br>이사            | 김기수<br>196506 | 2023~현재   | (주)링크제니시스 사내이사              | 이사회 | 3년 | -            | 최대주주<br>의<br>등기임원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21~현재   | 아이디스파워텔(주) 경영기획본부 전무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20~현재   | (주)아이디스 경영지원본부 전무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00~현재   | (주)아이디스홀딩스 경영기획본부 전무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983~1991 | 경북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<br>비상<br>무이<br>사 | 조신용<br>197308 | 2023~현재   | (주)링크제니시스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   | 이사회 | 3년 | -            | 최대주주<br>의<br>관계회사<br>등기임원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21~현재   | 아이디스파워텔(주)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21~현재   | (주)아이베스트 CFO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11~현재   | (주)아이디스 재경실장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991~1999 | 순천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외<br>이사            | 김화수<br>197010 | 2023~현재   | (주)링크제니시스 사외이사              | 이사회 | 3년 | -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20~2022 | 삼성전기 Zero-base Lab 리딩 및 컨설팅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16~2018 |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| 2002~2007 | (주)엔도어즈 대표이사       |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| ~2019     |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경제전공 박사 |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감사 | 임홍재<br>195907 | 2023~현재   | (주)링크제네시스 감사       | 이사회 | 3년 | - | 최대주주<br>의<br>관계회사<br>등기임원 |
|    |               | 2020~현재   | 아이디피(주) 감사         |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| 2020~현재   | 뉴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  |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| 2019~2020 | 동양피스톤(주) 사외이사      |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| ~1986     |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     |     |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●등기임원 후보자 이사회 추천사유

| 구분      | 성명  | 추천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내이사    | 김영달 | 김영달 후보는 현재 아이디스 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탁월한 기술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기에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내이사    | 김기수 | 김기수 후보는 현재 아이디스파워텔의 경영기획본부 전무이사로서 재무회계에 정통하며 당사 사업에도 전문적 기여가 예상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비상무이사 | 조신용 | 조신용 후보는 현재 아이디스파워텔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재무회계에 정통하며 당사 사업에도 전문적 기여가 예상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외이사    | 김화수 | 김화수 후보는 현재 에듀윌 고문과 여러 회사의 창업과 대표이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감사      | 임홍재 | 이사회는 상기 감사 후보자(임홍재)가 전문 경영인으로서, 당사가 보유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었고, 현재 뉴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감사 후보로 추천합니다. |